

청주지방법원 2018. 11. 29 선고 2017가단1219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변론 종결 2018. 10. 18

판결 선고 2018. 11. 29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,

가. 피고 B, D, E, F, G, H, I, 그은 충북 괴산군 K 대 2982㎡ 지상 별지 도면 표시 A블록조주택 71.69㎡, 같은 도면 표시 B 외양간창고 46.8㎡, 같은 도면 표시 C 화장실 4.5㎡, 같은 도면 표시 D 창고 52㎡에 관하여 별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위각건물을 철거하고,그 대지부분 174.99㎡를 인도하라.

나. 피고 C는 위 가.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E 목조주택 77㎡, 같은 도면표시 F 흙벽돌 스레트 창고 32.76㎡, 같은 도면 표시 G 외양간창고 부속건물80㎡를 각 철거하고,그 대지부분 189.76㎡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7. 9. 18.경 충북 괴산군 K 대 2982㎡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였고 2017. 10. 25.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A 블록조주택 71.69㎡ 및 그 부속건물인 같은 도면 표시 B 외양간창고 46.8㎡, 같은 도면 표시 C 화장실 4.5㎡, 같은 도면 표시D 창고 52㎡가 위치해 있다(이하 '주택 A와 그 부속건물'이라 한다).

위 주택 A와 그부속건물들은 망 L이 소유하다가 사망하였다.

다. 피고 C는 위 가,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E 목조주택 77㎡과 부속건물 로 같은 도면 표시 F 흙벽돌 스투트 창고 32.76㎡, 같은 도면 표시 G 외양간창고80㎡를 소유하고 있다(이하 '주택 E와 그 부속건물'이라 한다).

라. 소유자 L의 사망으로 인하여 주택 A와 그 부속건물이 피고 B, D,E, F, G, H, I, J에게 상속되었고,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 와 같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이 없는 사실, 갑 1내지 3호증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은 위 각 주택과 그 부속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사용권한 없이 위 주택 및 부속건물의 대지부분을 점유 및사용하고 있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주택 및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강부영

별지